

-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의 안 번 호	1388
------------	------

2020년 4월 23일
교 통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20년 4월 1일, 김태호 의원 외 9명 발의

나. 회부일자 : 2020년 4월 8일

다. 상정일자

- 제293회 서울특별시의회 제3차 교통위원회(2020년 4월 23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 김태호 의원)

가. 제안이유

- 최근 고령자 교통사고가 빠르게 증가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는 고령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경우에 교통비를 지급하는 등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한 적극적인 유도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임

- 하지만 이와 관련한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운전면허를 반납하고도 교통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운전면허 반납과 관련한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실태조사 근거 및 관련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도로교통법」 및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다. 입법예고

- 기 간 : 2020. 4. 13 ~ 2020. 4. 21

- 제출의견 : 의견 없음

라. 관련부서 의견조회 결과

- 서울시장(도시교통실 교통운영과) : 원안동의

- 제5조(실태조사) 조항을 신설하여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한 고령운전자 관련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해당 수요를 예측하고 이를 통해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4. 검토보고 요지

가. 개요

-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하는 경우에 제공되는 교통비 등과 관련한 재정지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해서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나. 검토의견

- 우리나라는 전체 사회인구가 점차 고령화되어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¹⁾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고령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서울시의 경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최근 '14년부터 '18년까지 약 39%가 증가한 만큼 고령자의 교통사고에 대한 예방정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임

〈서울시 어르신(65세 이상) 운전면허 현황〉

(단위: 명, 서울시)

구 분	'14	'15	'16	'17	'18
어르신 운전 면허소지자	451,196	490,672	523,287	578,683	628,467

- 실제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 건수도 증가 추세에 있으며 해마다 사망자는 평균 132명에 육박하는 상황으로 이는 고령운전자 뿐

1) [UN에서 정한 65세 이상 인구비율에 따른 분류] 1. 고령화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7% 이상
2. 고령사회 :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14% 이상 3. 초고령사회: 65세 이상 인구비율이 20% 이상
※ '점점 늙어가는 서울...고령사회 첫진입'(연합뉴스 2019.9) 2019년 기준 서울 전체인구 1,004만 대비 65세 이상 인구는 141만명으로 전체 비중에서 14.4%를 차지했으며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예상

만 아니라 시민들의 안전에도 불안 요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만들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은 전체 시민의 안전과도 직결되어 있다고 할 것임

〈 어르신(65세 이상) 교통사고 현황 〉

연도	사고건수	사망자수	부상자수	중상자수	경상자수	부상신고자수
2014	5,009	136	5,112	2,211	2,451	450
2015	5,388	139	5,575	2,361	2,707	507
2016	5,219	128	5,376	2,126	2,789	461
2017	5,357	139	5,570	2,141	2,990	439
2018	5,761	121	5,989	2,151	3,376	462

- 서울시는 2019년부터 「교통안전법」 제3조2)를 근거로 어르신 교통 사고 예방을 위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 1인당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제공하고 있음
- 2019년 사업추진 당시 서울시는 총 7억50백만원(티머니복지재단 기금 1억원 및 추경편성 예산 6억50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전체 신청자 약 13,400명³⁾ 중 7,500명만 대상자로 지정되었고 나머지 지원자 5,900명은 차년도 지급 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정책에 따라 교통카드를 반납하고도 예산 부족으로 인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었음

2) 「교통안전법」 제3조(국가 등의 의무) ②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 지역의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3) 2019년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신청자 총 14,536명 중 자격미달(70세 미만) 및 자치구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함

- 또한 서울시는 2020년 예산으로 총 8억30백만원(티머니 복지재단 기금 약 6억원, 국가보조금 약 4억원 별도)⁴⁾을 편성하였으나 전년도 신청자 중 혜택을 받지 못한 대상자들을 우선순위로 지원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올해도 운전면허를 반납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서울시 교통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는 만큼 고령운전자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은 관련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임

- 따라서 동 개정조례안은 고령운전자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운전면허를 반납하려는 고령운전자에 대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물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등의 관련 정책이 효율적으로 수립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4) 2020년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소요예산 매칭분담)

1. 서울시 고령운전자 지원 예산 :830,000천원(지원금 750,000천원/ 카드제작 50,000천원/ 카드발송 30,000천원)
2. (재)티머니복지재단 기금: 604,750천원(충전금 590,000천원/ 카드제작비 14,750천원)
3. 국가보조금(경찰청): 428,550천원(전액 교통카드 충전금으로 활용)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부터 제7조까지를 각각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하고,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
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
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른 재정지원 등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고령운전자와 관련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u></p> <p><u>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u>1.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보유 현황</u> <u>2.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u> <u>3. 고령운전자 이동 실태</u> <u>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사</u>
<p><u>제5조 ~ 제7조 (생략)</u></p>	<p><u>제6조 ~ 제8조 (현행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같음)</u></p>